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군의 역사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등〉

■ 이성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57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680호) 신·구조문대비표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성윤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8.
3. 회부연월일 : 2026.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헌법을 근거로 한 국군이(제74조 제2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의 하위법인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국군의 뿌리와 역사성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12·3 내란과 같이 대한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과 정통성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군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동시에, 민주사회에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외에, 항일 독립전쟁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군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한 국방의 의무 수행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Ⅲ. 검토의견

1. 목적조항에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자유민주주의 수호 규정 추가

□ 개정안은 본 법의 목적규정에 국군이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 광복군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국군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u> <u>위하여 -----</u> ----- -.

□ 현행법 제1조는 1963년 개정 이후 변경된 적은 없으며¹⁾, 본 법의 목적규정에서는 「대한민국헌법」²⁾(이하 “「헌법」”이라고 함)

1) 「국군조직법」(법률 제 1343호, 1963.5.20. 전부개정)第1條(目的) 이 法은 國防의 義務를 수행하기 위한 國軍의 組織과 編成의 大綱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 내용 및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개정안은 「헌법」에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³⁾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헌법」전문에서 규정한 임시정부 계승의 의미를 명시함으로써, 국군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역사성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⁴⁾.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조직을 설치하는 조직법의 목적규정은 「헌법」이 조직(기관)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공통적이고 단순한 법기술(法記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국군의 역사성과 역할 및 지위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술한 개정안은 통상의 법 형식과 상이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헌법」에 직접 근거한 법률 중 일부의 목적규정]

법률명	조문 내용
「정부조직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u>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u>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u>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u>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 「대한민국헌법」 제74조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국군은 의병-독립군-한국광복군(이하 “광복군”이라 함)으로 이어 오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국민의 군대임.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감사원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u>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u>조직과 직무를 규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u>필요한 사항을 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로, 「헌법」에 직접 근거한 조직법 중 「지방자치법」, 그 외 「헌법」에 직접 근거한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목적 규정에 의의 등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헌법」에 직접 근거한 법률 중 목적규정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된 법률]

법률명	조문 내용
「지방자치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u>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공직선거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u>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근로기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u>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 따라서 국군의 정통성 및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국방부의 입장, 「헌법」에 직접 근거한 기존 법률 목적규정의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680호)⁵⁾이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본 개정안의 개정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2. 항일 독립전쟁 역사교육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신설

- 개정안은 국가가 장병 등에게 항일 독립전쟁 역사를 교육하도록 의무화하고, 군인이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2(국군의 정신적 토대 및 교육) ① 국가는 장병 및 사관생도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항일 독립전쟁 역사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안 제5조의2제1항은 국군의 역사 교육 의무화, 제2항은 군인의 소양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국군조직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⁶⁾으로,

6) 「국군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의 교육 및 소양,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에 관한 규정은 본 법보다는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률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⁷⁾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교육 관련 규정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에서 헌법 및 국방관련 법령(제34조⁸⁾), 전쟁법 교육(제34조의2⁹⁾), 다문화 교육(제37조¹⁰⁾), 기본권 및 성인지교육(제38조¹¹⁾)을 이

-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4조(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①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의2(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7조(다문화 존중) ①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2. 이 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군의 역사 교육
규정을 추가로 명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보임.

□ 다음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율하려는 안 제5조의2
제2항의 경우, 상위법인 「헌법」에서 이미 국군의 정치적 중립
성을 천명¹²⁾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에서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를 이미 규율¹³⁾
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면 본 법률보다는 해당 법률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국방부는 군인에 대한 교육 실시와 군인의 복무자세(소양) 및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동법 개정안은 동법의 목적
과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마련 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대한민국헌법」 제5조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 참고자료: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204680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방의</u>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의</u> -----.